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4드단●●●●●● 위자료

원 고 주AA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14. 10. 8.

판 결 선 고 2014.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장CC은 1990. 3.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경 신용카드모집 업무를 하던 중 장CC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와 장CC은 수시로 만나고,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원고 측은 장CC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CC을 미행하여 오던 중, 2013. 10. 12. 피고와 장CC이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3. 10. 19. 피고와 장CC이 경남 통영시로 놀러갔다가 돌아오면서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것을 목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와 장CC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장CC과의 이혼을 결심한 후 2013. 10. 21.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법원 2013호****)을 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2013. 12. 23. 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주DD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용호3동장, 부산해운대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장C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CC과 자주 연락하고 만났을 뿐 아니라 같은 모텔에 투숙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장CC의 부정행위에 가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와 장CC의 행위는 원고와 장C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와 장CC이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와 장CC의 혼인기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비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2. 3.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철